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45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박정의원안) ..	2

I. 개요

1. 박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4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박정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등) ○ 감면대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 이전 제외)하는 기업이 접경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 ○ 감면율: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서비스업 2,000만원) ○ 추정: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 ○ 적용기한: 없음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개축하는 기업부터 적용

* 박정의원안 2025. 2. 26. 발의(의안번호 8452)

□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기존 공장 이전 제외)하는 기업이 접경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¹⁾은 비무장지대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또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 등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춘천시, 속초시 등 총 17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해당함.

□ 개정안은 이러한 접경지역을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각종 특구와 동일하게 해당 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접경지역은 안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더딘 상황 이므로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 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접경지역은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 등 정치 지리적인 여건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 지역이 기초적인 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태이며,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지역경제의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²⁾.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한도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경지역 입주기업의 고용유인이 증가되어 지역특구 지역의 청년 등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접경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17개 접경지역 중 8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4개 지역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³⁾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2019. 1. 참고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도 동일한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⁴⁾에 따르면 해당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⁵⁾에 해당하거나 지역활성화지역⁶⁾으로 지정될 경우 접경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 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 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5) 현재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15개 시·군으로,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제외한 모든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에 해당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예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 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사업장 신설 포함)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음.

둘째, 현재 도심융합특구,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그 외 다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전국의 특구화 현상이 심화되어 과세지역과 비과세지역으로 이분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별도의 적용기한을 마련하지 않고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있는데, 다른 조세감면제도와 동일하게 적용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해당 특례의 타당성,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정책의 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